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146-1 /전화 (02)739-3141~7 /전송 738-3895~6

문서번호 수개 67401 -

시행일자 1997. 3. 3 . (년)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선			지	"사 보"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4대강 수질개선계획 수립·추진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1997- 7호)

1. 21세기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물 문제는 우리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2. 이와같은 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수질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3. 앞으로 물문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과 관련 자치단체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4. 따라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수질관리 관련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4대강 수질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위와같은 취지에서 각 부처에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4대강중 상수원수 2급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계획을 우선하여 수립·추진토록 할 것

(1) 각 부처에서는 불임 지침에 따라 부처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여 '97.4.20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97.4.30까지 이를 총괄 종합하여 수질개선기획단에 보고하기 바람

(2) 각 부처는 해당부처의 수질개선계획 내용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수계별 해당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수립한 수질개선계획을 기초로하여 부처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나. 한강, 영산강등 기타수계의 수질개선계획은 낙동강유역 수질 개선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수립하여 '97.9.30까지 수질개선기획단에 보고할것

불 임 : 4대강 수질개선계획 수립·추진 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받는곳 :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총무처, 기상청

4대강 수질개선계획 수립·추진 지침

□ 목 표

2005년까지 4대강유역의 상수원수 수질을 2급수로 개선

※ 다만, 1일 50만톤이상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으로서 상수원수질이 2급수를 초과하는 낙동강은 2001년까지 2급수로 개선

□ 계획기간 : '97 - 2001

□ 추진계획 내용

- 맑은물공급대책 및 물관리종합대책을 기본으로하여 수립하되 다음 내용을 추가, 보완
 - 수계별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및 운영·관리 개선
 - 댐건설, 광역상수원 확충, 기존댐 활용등 신규상수원 확보방안
 -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능력 향상방안
 - 특정유해물질등의 오염실태 및 제거

-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
- 민·관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운동, 물 절약운동, 세천 살리기운동 전개
- 기타 수원 함양을 위한 산림조성 및 수질개선방안 등

□ 추진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등 관할구역내 수질개선계획을 수립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문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계획을 기초로 하여 부처별 계획을 수립·추진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대한 수질개선 관련 work shop 개최
-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의 장관 및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추진일정

- 각 중앙부처는 해당부처 소관사항중 지자체와 관련이 있는 수질 개선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97.3.10 까지 지방자치단체 시달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4.10까지 해당 중앙부처 및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 각 중앙부처는 지자체별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포함 해당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4.20 까지 환경부와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 환경부는 각 중앙부처의 계획을 총괄·종합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4.30까지 수질개선 기획단에 제출
- 한강, 영산강등 기타수계의 수질개선대책은 낙동강유역 수질개선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수립하여 '97.9.30까지 수질 개선기획단에 제출
 - 다만, 수질개선계획 내용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등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97.4.30.까지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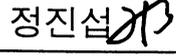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146-1 /전화 (02)739-3141 ~7 /전송 738-3895~6

문서번호 수개 67401 -

시행일자 1997. 2. 3. (년)
3. 3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취급		단 장	국무총리
보존			
부단장			
부 장		총괄심의관	
과 장			
기 안	정진섭 		협조

제 목 4대강 수질개선계획 수립·추진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1997- 7 호)

1. 21세기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물 문제는 우리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2. 이와같은 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수질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3. 앞으로 물문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과 관련 자치단체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저상~~ ^{국가적} 과제입니다.

4. 따라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수질관리 관련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4대강 수질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므로써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위와같은 취지에서 각 부처에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4대강중 상수원수 2급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계획을 우선하여 수립·추진토록 할 것

(1) 각 부처에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부처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여 '97.4.10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97.4.20까지 이를 총괄 종합하여 수질개선기획단에 보고하기 바람

(2) 각 부처는 해당부처의 수질개선계획 내용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수계별 해당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수립한 수질개선계획을 기초로하여 부처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나. 한강, 영산강등 기타수계의 수질개선계획은 낙동강유역 수질 개선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수립하여 '97.8월까지 수질개선기획단에 보고할 것

붙 임 : 4대강 수질개선계획수립·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받는곳 :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총무처, 기상청

4대강 수질개선계획 수립·추진 지침

□ 목 표

2005년까지 4대강유역의 상수원수 수질을 2급수로 개선

※ 다만, 1일 50만톤이상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으로서 상수원수질이 2급수를 초과하는 낙동강은 2001년까지 2급수로 개선

□ 추진계획 내용

- 맑은물공급대책 및 물관리종합대책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내용을 추가, 보완
 - 수계별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및 운영·관리 개선
 - 댐건설, 광역상수원 확충, 기존댐 활용등 신규상수원 확보방안
 -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능력 향상방안
 - 특정유해물질등의 오염실태 및 제거
 -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
 - 민·관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운동, 물 절약운동, 세천 살리기운동 전개
 - 기타 수원 함양을 위한 산림조성 및 수질개선방안 등

□ 추진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등 관할구역내 수질개선계획을 수립 추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계획을 기초로 하여 부처별 계획을 수립·추진
-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의 장관 및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추진일정

- 각 중앙부처는 해당부처 소관사항중 지자체와 관련이 있는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97.3.5까지 지방자치단체 시달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3.30까지 해당 중앙부처 및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 각 중앙부처는 지자체별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포함 해당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4.10까지 환경부와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 환경부는 각 중앙부처의 계획을 총괄·종합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4.20까지 수질개선 기획단에 제출

- 한강, 영산강등 기타수계의 수질개선대책은 낙동강유역 수질개선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수립하여 '97.8.30까지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 다만, 수질개선계획 내용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등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97.4.20.까지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